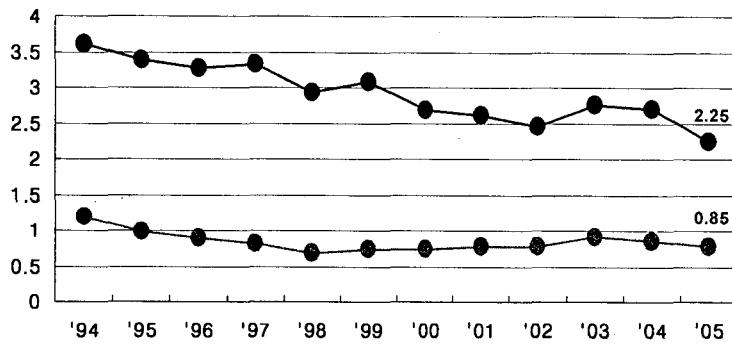




□ 현재 산업안전보건 예방 활동의 한계는 없는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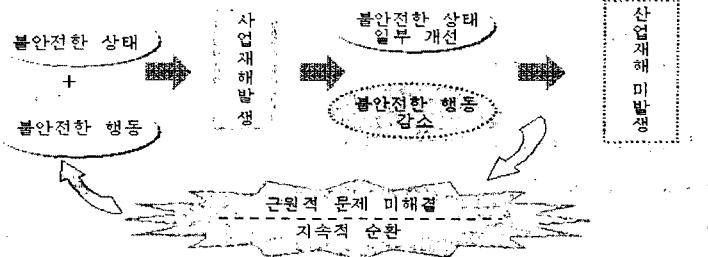
? 2005년 산업재해자는 85,411명으로 하루 234명, 사망자는 하루평균 6.8명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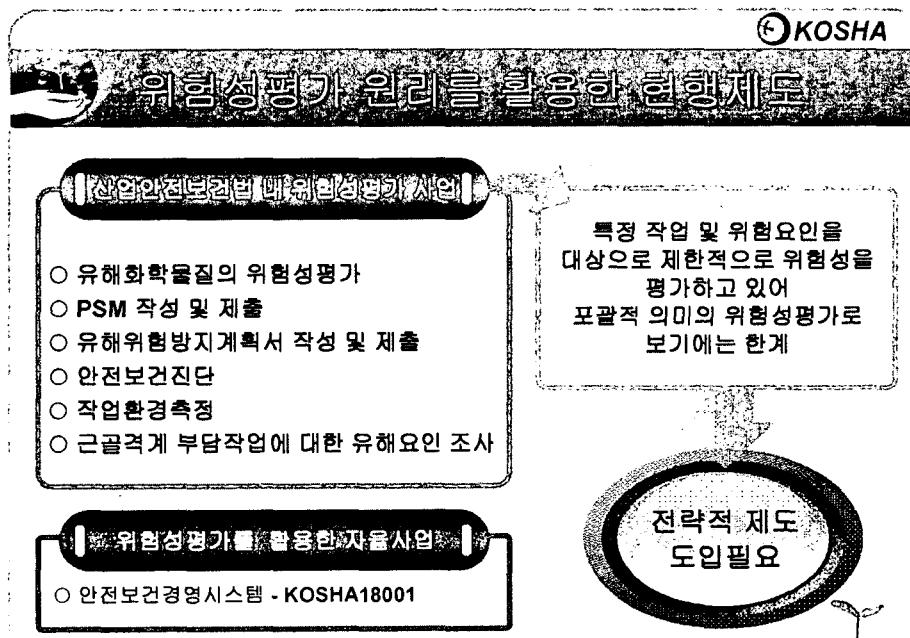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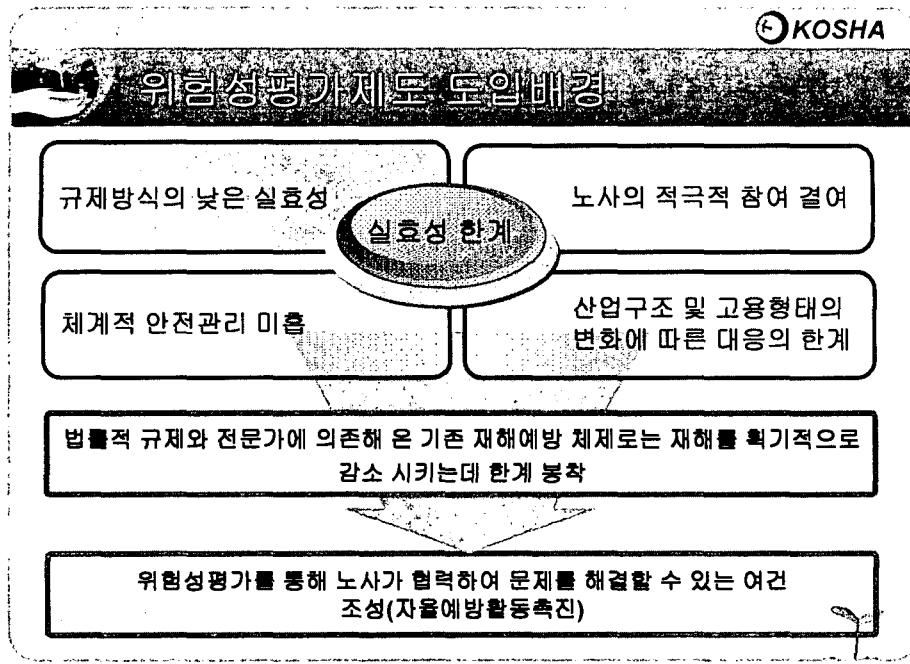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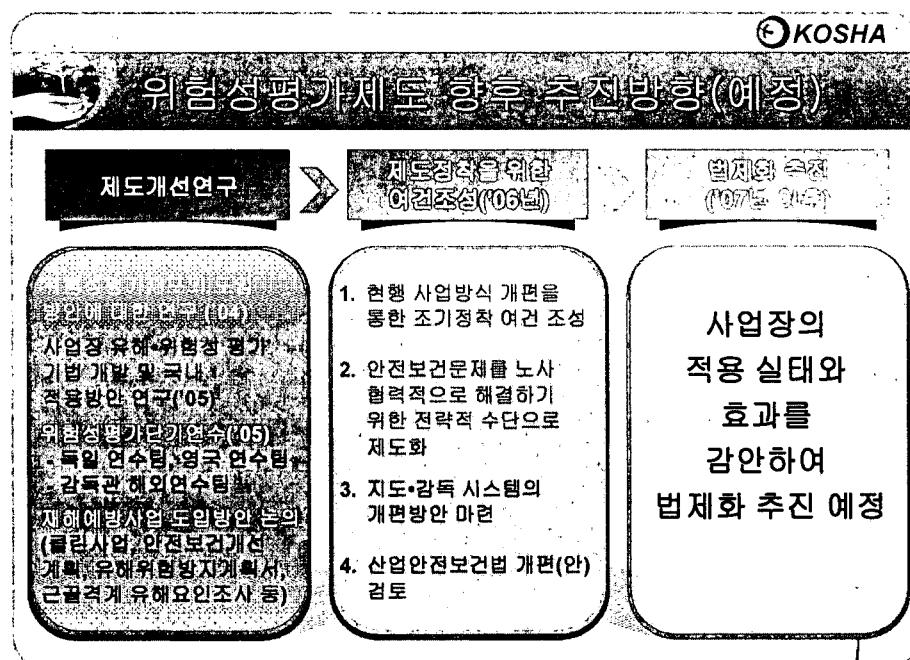
□ 안전 및 보건규칙만을 외형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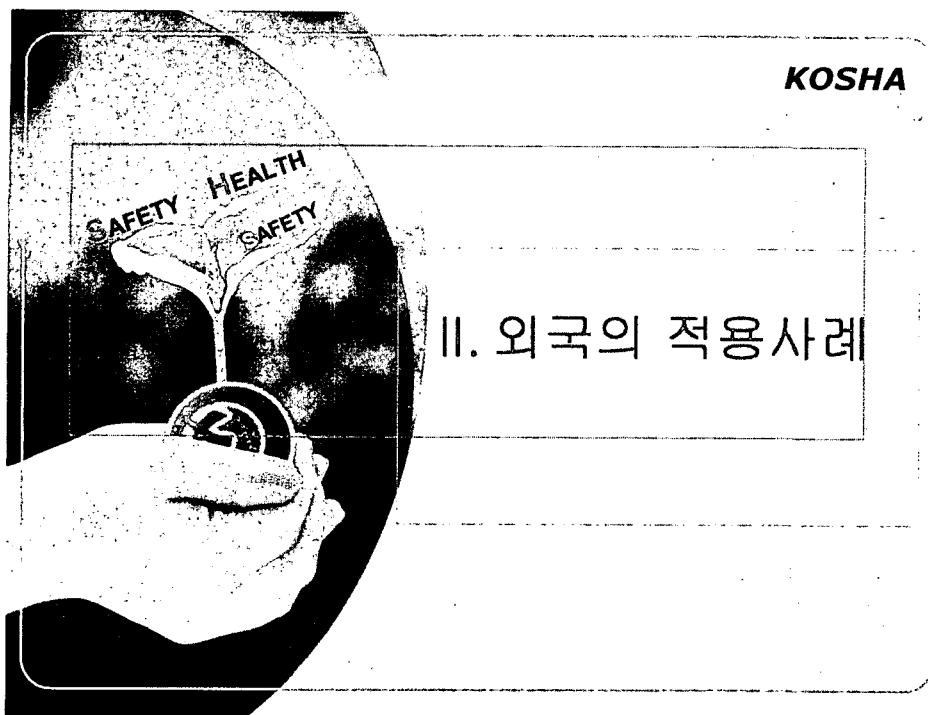
점검에 대비한 최소한의  
안전기준 준수

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









## II. 외국의 적용사례

**ILO와 EU**

**Comprehensive Obligation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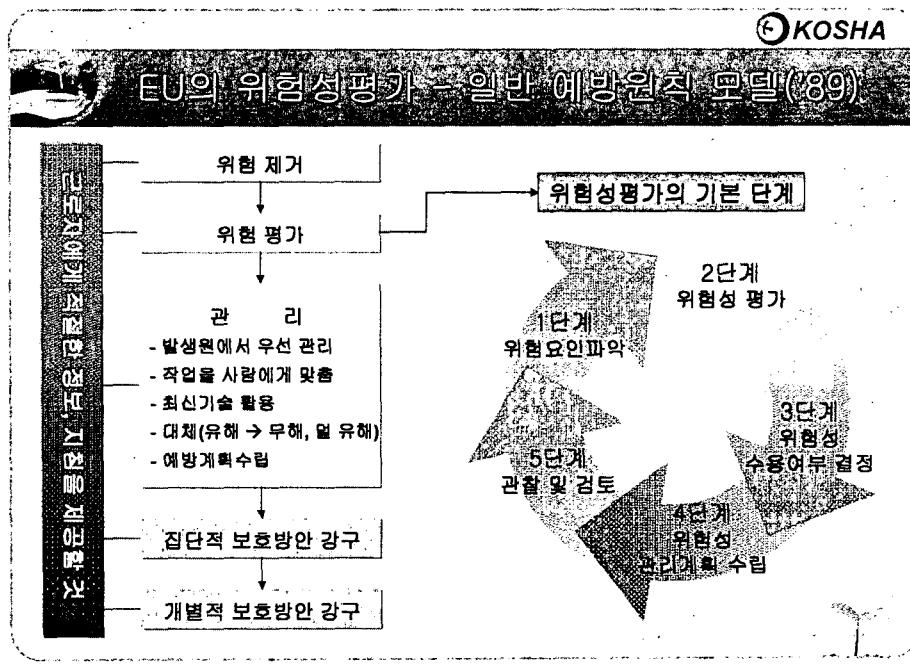
- ILO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(Convention No.155, 1981)
- 사업주의 의무(제16조)  
    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내에서 자신의 규제하에 있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상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
  - 작업장, 설비 및 작업공정
  - 화학, 물리, 생물학적 물질 및 인자

정보	예방활동	훈련
장비, 설비	사업주 ↔ 근로자	기타 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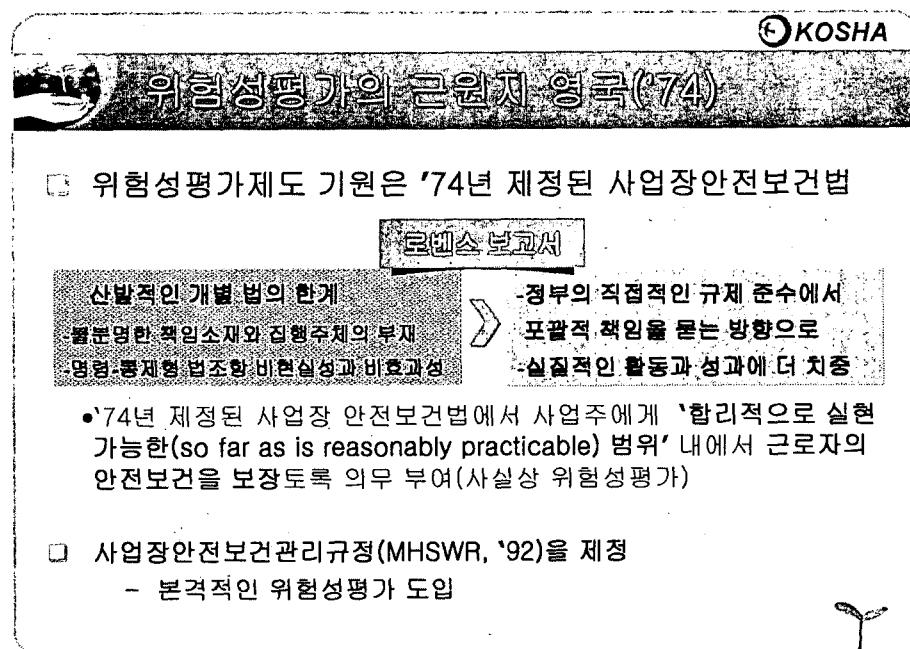
**일반예방원칙** ↔ **위험성평가**

< 사업주 책임의 구조 >

- 1993년 EU 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본 원칙에 포함된 주 사업자와 인력부문 감독자에 관한 지침(EU Council Directive 89/391/EEC) 제3점
- 산업안전보건의 일반원리를 규정 (일명 Framework Directive)



11



Five steps to Risk assessment

1.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 
시행령(MHSWR) 제3조:  
위험성평가  
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단계

- 1단계 : 위험요인의 확인
- 2단계 : 누가 어떻게 위험에 영향을 받는가
- 3단계 : 위험도를 평가, 현재의 예방조치가 적정한지 또는 추가적 예방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
- 4단계 : 결과물의 기록
- 5단계 : 재평가와 필요시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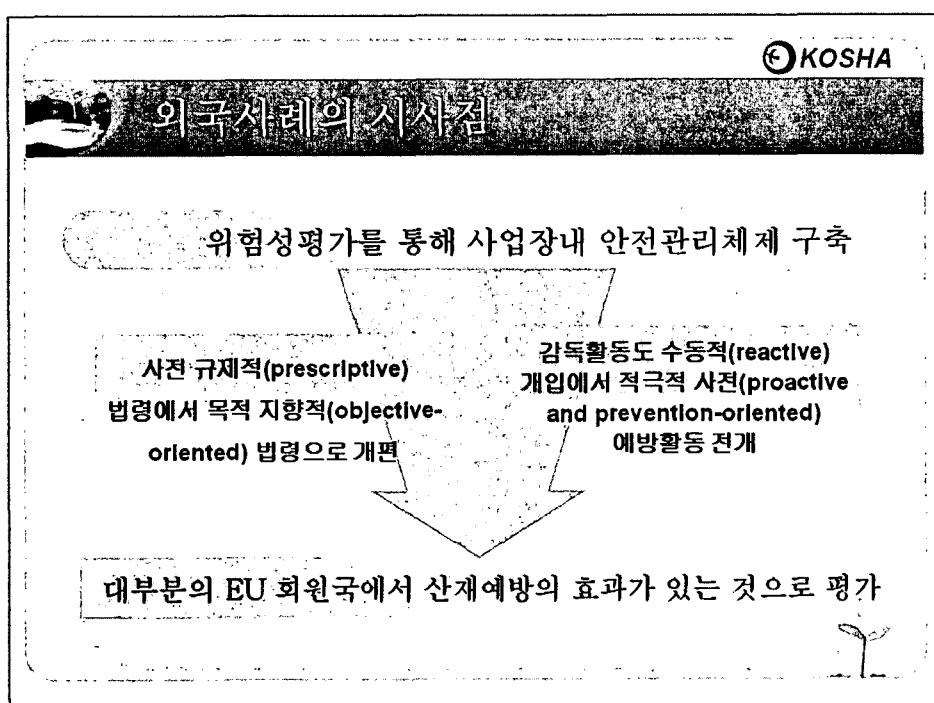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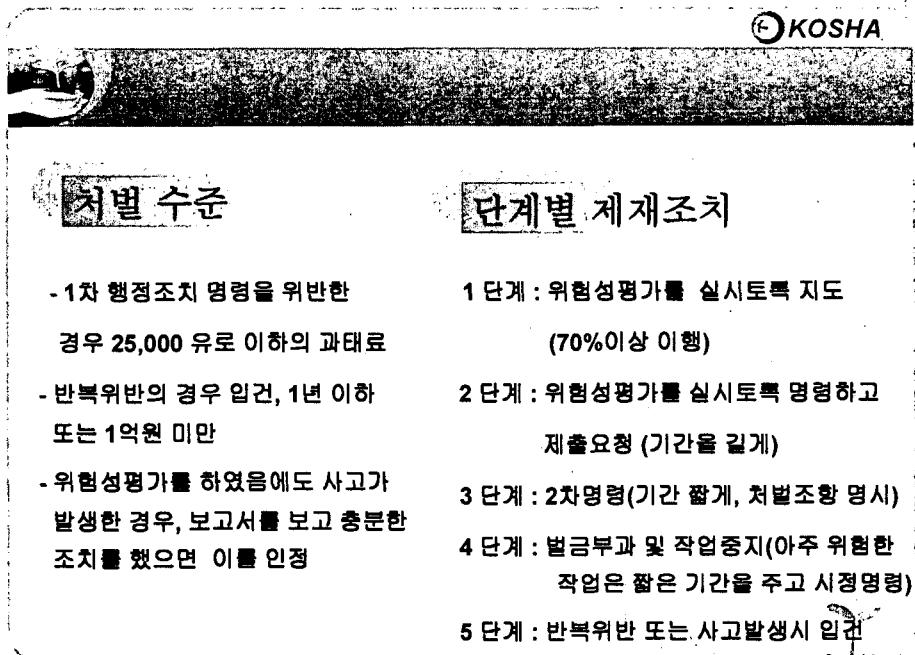
### 독일의 위험성평가 (9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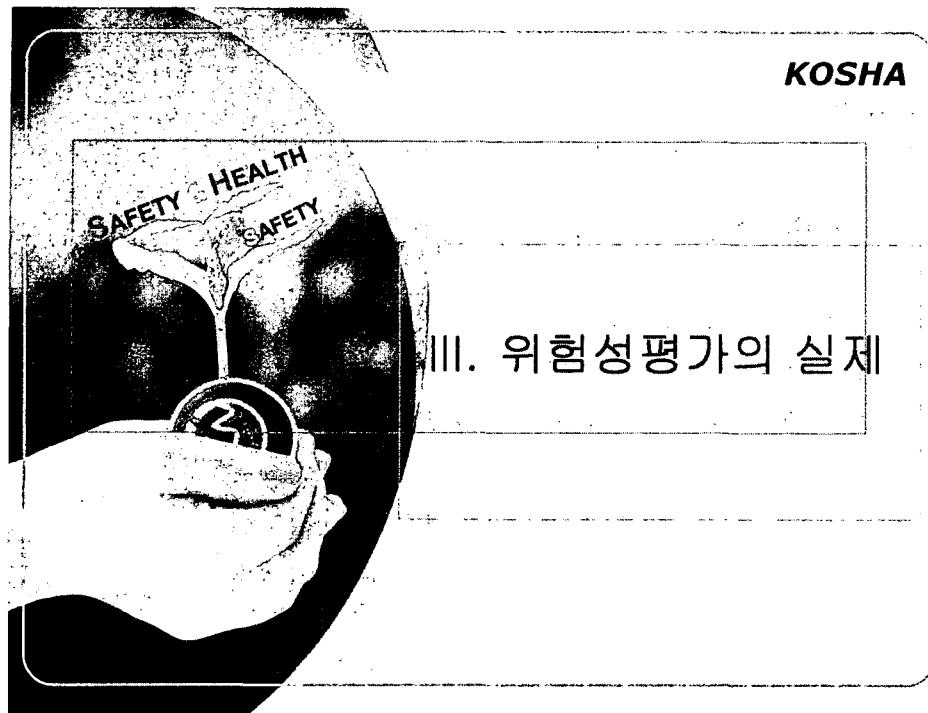
구분	관련 법령	내용
법(Gesetz)	사업장안전보건조치법(ArbSchG)	위험성평가 근거
시행령 (Verordnung)	유해물질방지령(GefStoffV) 건설안전시행령(BaustellenV) 직업안전시행령(BetriebssicherheitV) '직업장소시행령(ArbeitstattV) '개인보호구사용령(PSA-BenutzungsV) '작업기구사용시행령(AMBV) 'VDT작업시행령(BildschirmarbeitsV) '중량물 취급시행령(LastenhandhabungsV) 등..	표시는 유험연합 6Package 대응 규정임
시행규칙 (Vorschrift)	제3회예방규정(UVY, BGV)	사회법(SGB VII) 에서 BG에 위함

**【 위험성평가 순서도 】**

```

graph TD
    A[준비(Vorbereiten)] --> B[수집재료(Feststellen)]
    B --> C[현상(Ermitteln)]
    C --> D[책정성 검증(Überprüfen)]
    D --> E[실행(Durchführen)]
    E --> F[대응방법(Festlegen)]
    F --> G[문서화(Dokumentieren)]
    G --> A
  
```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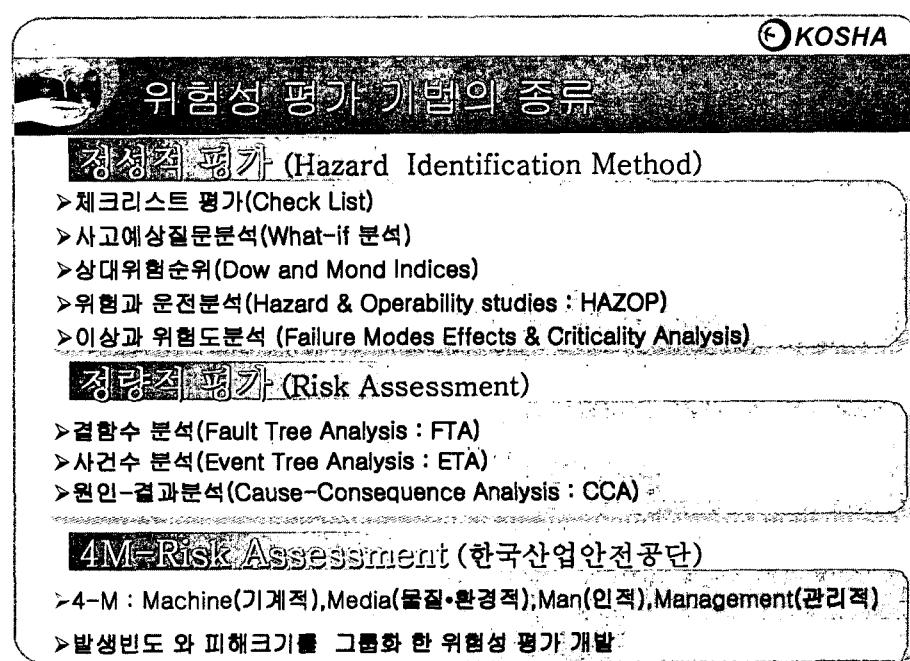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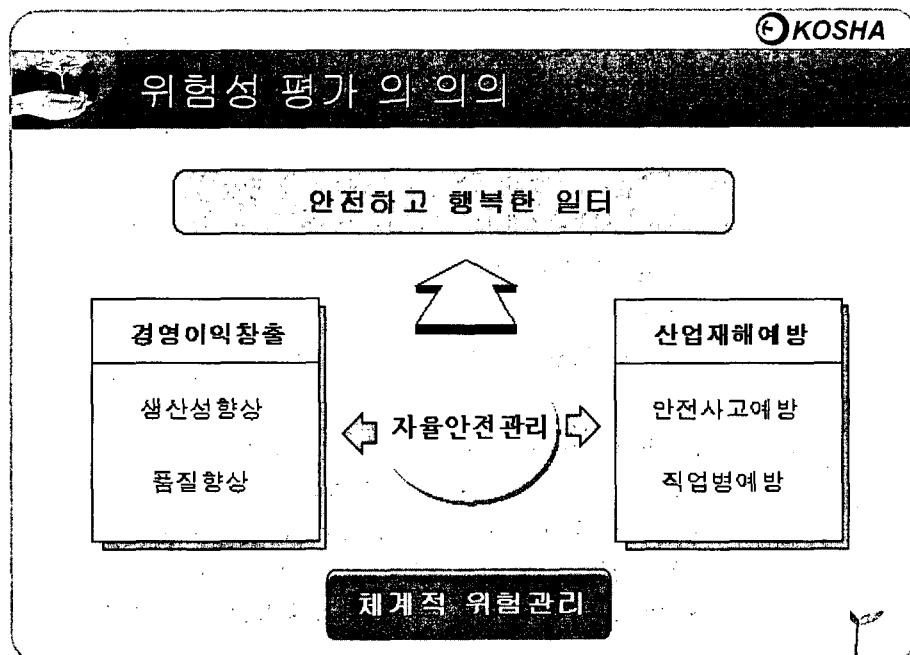
### III. 위험성평가의 실제

**KOSHA**

#### 위험성 평가 목적

- 잠재된 유해·위험요인 도출
- 위험의 제거 또는 관리(피해의 최소화)

- ◆ 유해·위험이 어떤 곳에 있는가? (유해·위험요인)
  - 위험기계·기구
  - 위험물질
  -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
  -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
- ◆ 위험요인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는 적절한가?
- ◆ 위험요인이 사고(재해)로 발전할 가능성(빈도)은 어느 정도인가?
- ◆ 사고로 발전한 경우 사고피해 크기(강도)는 어느 정도인가?
- ◆ 위험을 제거 또는 발생빈도를 감소시킬 대책은 무엇인가?
- ◆ 사고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가?





## 4M의 흥미별 유해·위험요인(예시)

**Machine  
(기계적)**

- 기계?설비 설계상의 결함
- 위험방호장치의 불량
- 본질안전화의 결여
- 사용 유til리티(전기, 압축공기, 물)의 결함
-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

**Media  
(물질?환경적)**

- 작업공간(작업장 상태 및 구조)의 불량
- 가스, 증기, 분진, 흥, 미스트 발생
- 방사선, 유해광선, 고온, 저온, 초음파, 소음, 진동, 산소결핍, 병원체, 이상기압 등에 의한 노출
-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확인 등

**Man  
(인적)**

- 근로자 특성에 의한 불안전 행동
  - 장애자, 여성, 고령자, 외국인, 비정규직, 미숙련자 등
- 작업정보의 부적절
- 작업자세, 작업동작의 결함
- 작업방법의 부적절 등

**Management  
(관리적)**

- 관리조직 및 부하에 대한 감독·지도의 결여
- 안전관리계획, 규정, 매뉴얼의 미작성
- 교육?훈련의 미흡
-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미게시
- 건강관리의 사후관리의 미흡 등



## 위험성 평가팀의 운영

### 평가팀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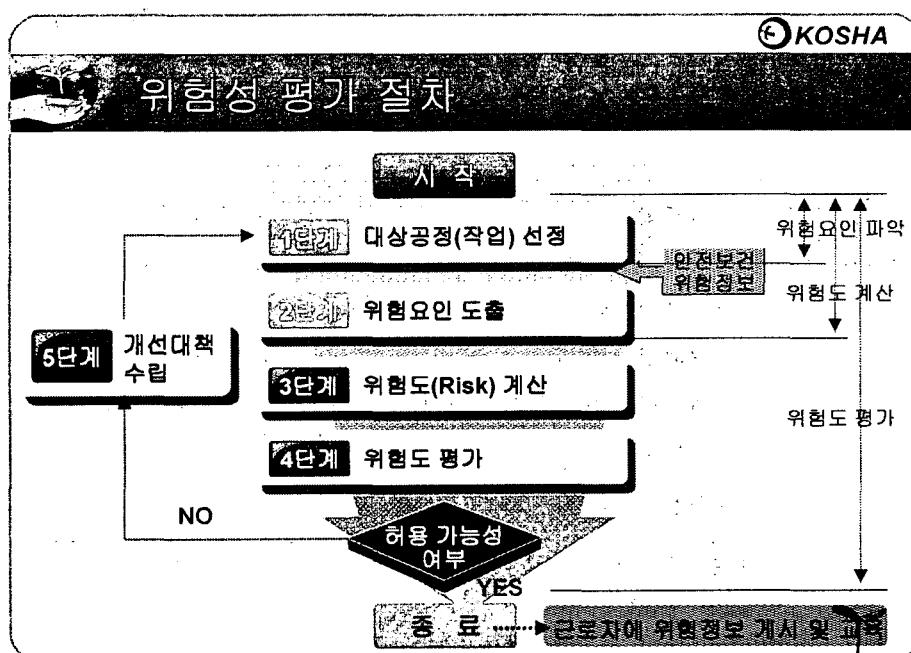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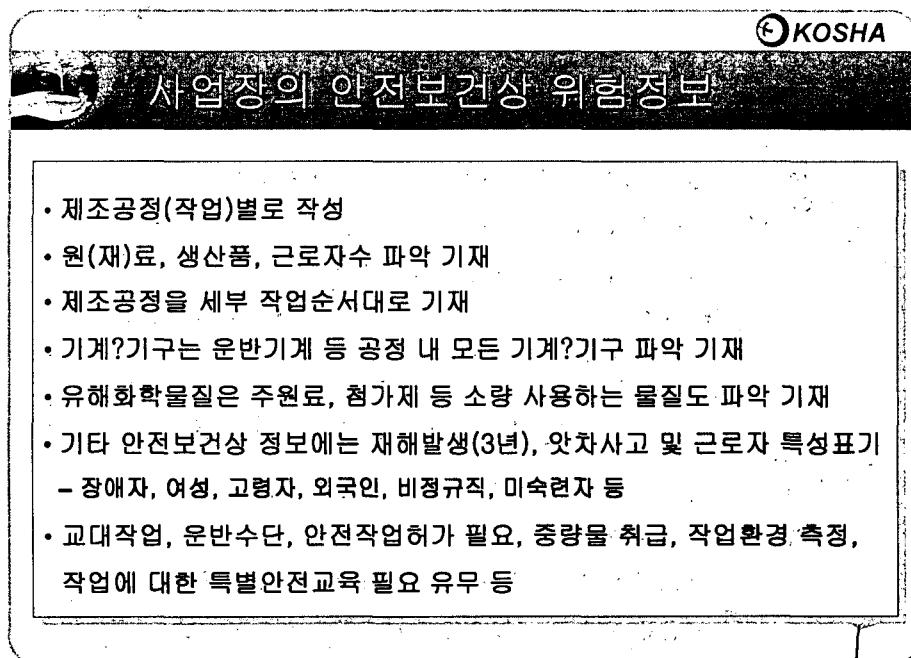
- 팀리더: 평가대상 공정 또는 작업의 책임자
- 대상공정 작업책임자: 반장 또는 특별한 경우 작업자
- 정비작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등
  - ◆ 작업반장을 리더로 근로자 참여하에 작업반별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
  - ◆ 대상공정 책임자를 리더로 검토팀을 구성, 작업반에서 작성한 위험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음

### 팀리더 역할

- 평가대상 공정(작업)에 대한 작업지식과 경험 보유
- 위험성 평가 기법 숙지
- 대상공정의 안전보건정보(악차사고 사례 포함) 수집
- 팀원간 안전보건정보 교환을 통한 완전한 이해

### 평가진행 방법

- 위험성평가의 수행은 팀리더가 중심이 되어 수행
- 리더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도출하도록 분위기 유도
  - 4M 항목별로 Brain Storming 기법 활용
-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빈도 및 사고크기(위험도계산)를 결정
- 위험도가 허용가능 위험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
-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의 경우 개선대책 수립
- 개선대책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
  - ◆ 개선대책 실행 후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는 가능한 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내 이어야 함



OKOSHA

## 위험성평가 단계별 수행내역

**1단계 평가대상공정(작업) 선정**  
평가대상을 공정(작업)별로 분류하여 선정

<자동차부품 "A"의 작업공정 흐름도(예시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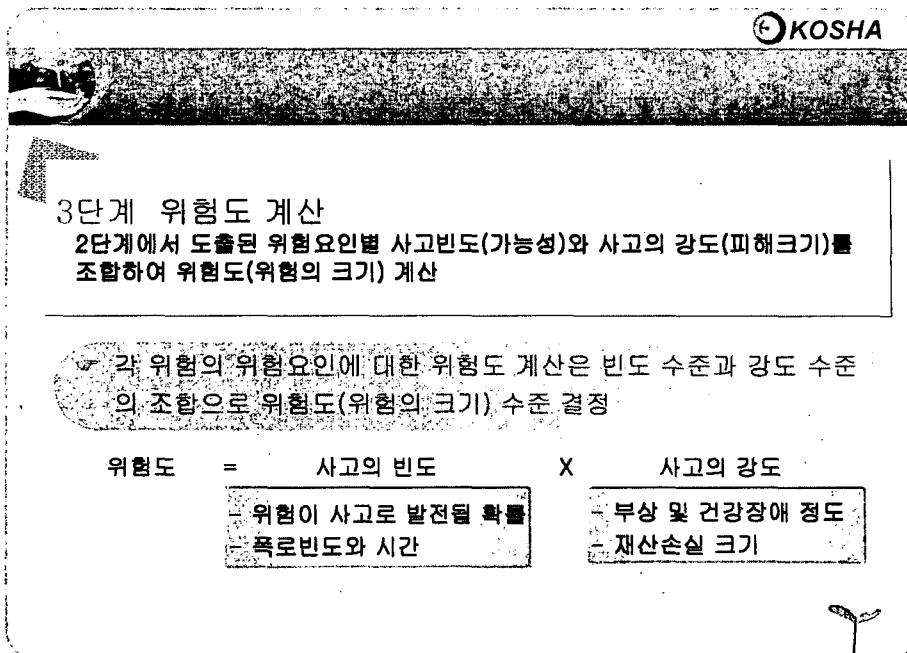
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(작업)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 위험정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 확정

OKOSHA

## 2단계 위험요인의 도출

- 위험을 기계(Machine), 물질 및 환경(Media), 인적(Man), 관리(Management) 등 4M에 의해 구분평가
- 기계는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물적위험 평가
- 물질 및 환경은 소음, 분진,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
- 인적은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위험 평가
- 관리는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사항 평가

※ 위험요인 도출  
유해·위험요인 대상별 도출방법에 의하여 위험요인 도출



**위험발생빈도(의미)**

빈도 구분	빈도 수준	내용
가능성 거의 없음	1	10년 1회정도 발생할 경우
가능성 낮음	2	3년 1회정도 발생할 경우
가능성 있음	3	1년 1회정도 발생할 경우
가능성 높음	4	1개월 1회정도 발생할 경우
빈번함	5	1일 1회정도 발생할 경우

**위험발생강도(의미)**

강도 구분	강도 수준	내용
영향 없음	1	재해로 인한 인적손실이 없는 경우
경미한 불편업재해	2	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편업재해인 경우
경미한 휴업재해	3	휴업재해인 경우
중대재해	4	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

[사고장 특성에 따라 빈도와 강도의 수준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음]

OKOSHA

## 위험도 결정(빈도 × 강도)에서

- 빈도와 강도의 조합으로 위험크기 결정

빈도	강도	영향 없음	경미한 불편	경미한 휴업 재해	중대재해
			업 재해	재해	
수준	1	1	2	3	4
거의 없음	1	1	2	3	4
낮 음	2	2	4	6	8
있 음	3	3	6	9	12
높 음	4	4	8	12	16
빈 번 함	5	5	10	15	20

OKOSHA

## 4단계 위험도 평가

3단계에서 도출된 위험도 계산값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인지?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?를 판단

위험도 수준	관리기준	비고
1~3 무시할 수 있는 위험	현재의 안전대책 유지	위험작업을 수용함 (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)
4~6 미미한 위험	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	
8 경미한 위험	위험의 표지부착,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	
9~12 상당한 위험	계획된 정비·보수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	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(조건부로 작업 허용 가능)
12~15 중대한 위험	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·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	
16~20 허용불가 위험	즉시 작업중단(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)	위험작업 불허 (즉시 작업중지)



#### 4단계 위험도 평가

3단계에서 도출된 위험도 계산값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인지?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?를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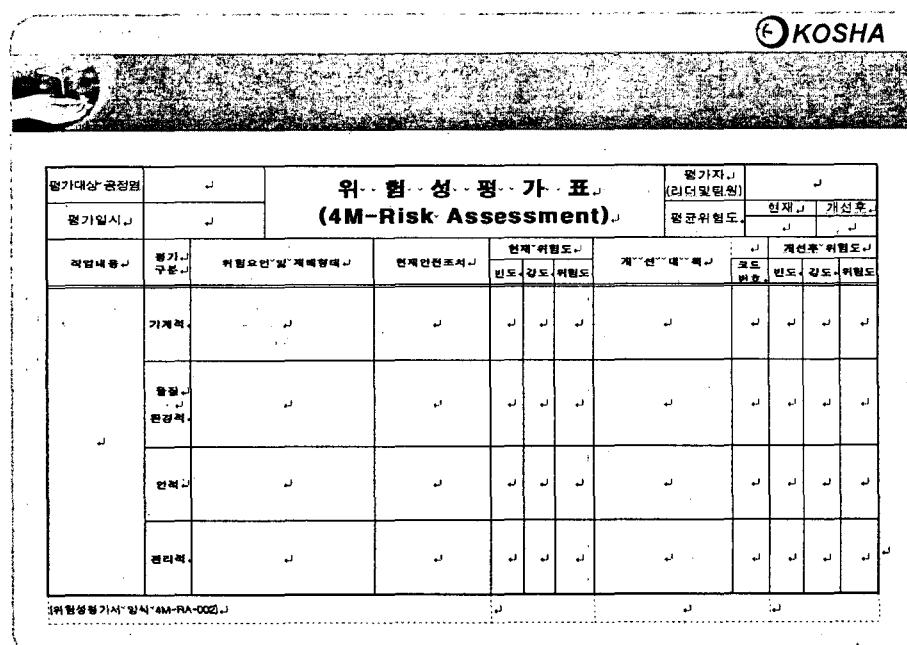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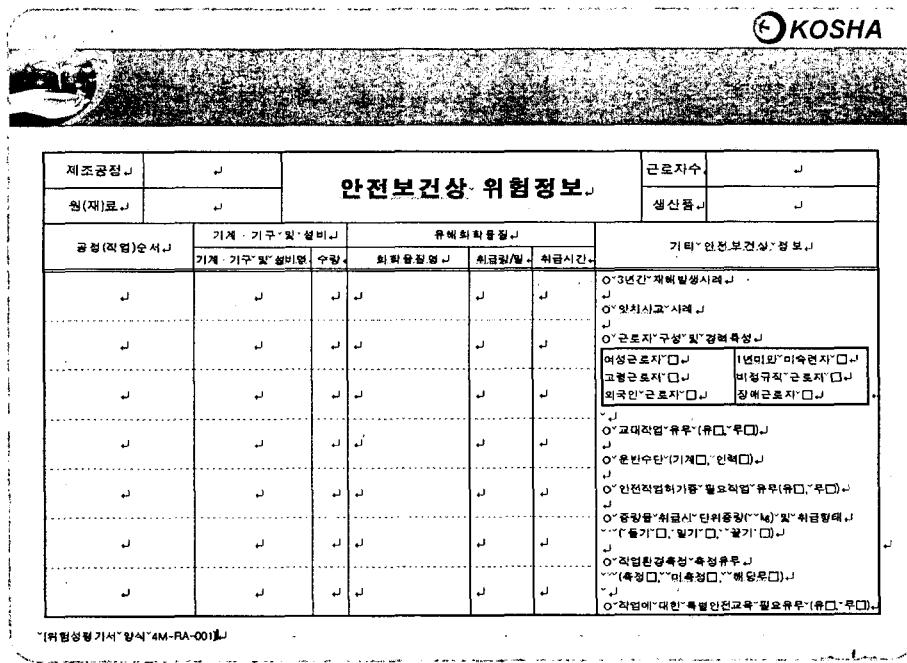
위험도 수준	관리기준	비고
1~3 무시할 수 있는 위험	현재의 안전대책 유지	
4~6 미미한 위험	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	위험작업을 수용함 (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)
8 경미한 위험	위험의 표지부착,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	
9~12 상당한 위험	계획된 정비·보수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	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(조건부로 작업 허용 가능)
12~15 중대한 위험	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·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	
16~20 허용불가 위험	즉시 작업중단(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)	위험작업 불허 (즉시 작업중지)



#### 5단계 개선계획 수립

- 허용할 수 없는 위험, 즉 상당한 위험, 중대한 위험, 허용 불가 위험은 개선대책 수립
-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수립
- 개선대책 실행 후 위험도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수준





KOSH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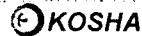
개선대상· 공정(작업)명		개선 실행·계획서			실행부서		담당자		팀장		과장장	
직선일자					담당자		팀장		과장			
개선대상 단위(작업) 코드·제작 번호· 형태					개선 대책 (위험성평가서 대책보다 구체화·제시)		개선 대책의 실시		확인 일자		비고	
-	-	-	-	-	-	-	-	-	-	-	-	
-	-	-	-	-	-	-	-	-	-	-	-	
-	-	-	-	-	-	-	-	-	-	-	-	

[위험성평가서] 양식 "4M-RA-003"

KOSHA

제조공정		프로세스·공정		안전보건상·위험정보 (자동차·부분품·제조업)				생산품		자동차·도어·기槐장치용 프로세스	
원(재)료		첨단						근로자수		50%	
공정(작업)순서		기계·기구 및 설비명		유해취약률				기타·안전보건상·정보			
		기계·기구 및 설비명 수량		회회율질영		취급방법					
1. 부재·입고		차체작업		-	-	-	-	O·3년간 재해 발생시례 -> 차체 3개월 동안 기존 가격(100%) / "도프스온가격(100%)" O·인차사고 시례 -> 인차사고 2경지 제작 충돌 / "인차사고(100%)" O·근로자 구상 및 경력 특성 여성근로자 ■ / 남미인·미국현지 ■ 고령근로자 ■ / 비정규직·근로자 ■ 외국인·근로자 ■ / 장애근로자 ■			
2. 조립		차체작업		5	-	-	-				
3. 조립·생산		도프스		15	-	-	-	O·교대작업·유무(유 ■·무 □) :: 22대 O·운반수단(기계 ■·인력 □) :: 자동차·이동식차 O·안전작업허가증·필요작업·유무(유 □·무 ■) O·증강음·인력취급시·인력(12kg) 및 취급형태 -> (돌기) ■·(밀기) □·(끌기) □ O·작업환경측정·측정유무(측정 ■·미측정 □)· 배달두부 -> Hexane 측정치 4ppm(농축기 3%~50ppm) O·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·필요유무(유 ■·무 □)			
4. 출고		스포츠차체		10	-	-	-				
5. 출고		차체작업		2	Hexane(Hexanol)	5.2	2	O·교대작업·유무(유 ■·무 □) :: 22대 O·운반수단(기계 ■·인력 □) :: 자동차·이동식차 O·안전작업허가증·필요작업·유무(유 □·무 ■) O·증강음·인력취급시·인력(12kg) 및 취급형태 -> (돌기) ■·(밀기) □·(끌기) □ O·작업환경측정·측정유무(측정 ■·미측정 □)· 배달두부 -> Hexane 측정치 4ppm(농축기 3%~50ppm) O·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·필요유무(유 ■·무 □)			
6. 출고		차체작업		2	-	-	-				
7. 출고		인력		3	-	-	-	O·교대작업·유무(유 ■·무 □) :: 22대 O·운반수단(기계 ■·인력 □) :: 자동차·이동식차 O·안전작업허가증·필요작업·유무(유 □·무 ■) O·증강음·인력취급시·인력(12kg) 및 취급형태 -> (돌기) ■·(밀기) □·(끌기) □ O·작업환경측정·측정유무(측정 ■·미측정 □)· 배달두부 -> Hexane 측정치 4ppm(농축기 3%~50ppm) O·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·필요유무(유 ■·무 □)			
8. 출고		차체작업		2	-	-	-				
9. 출고		차체작업		3	-	-	-	O·교대작업·유무(유 ■·무 □) :: 22대 O·운반수단(기계 ■·인력 □) :: 자동차·이동식차 O·안전작업허가증·필요작업·유무(유 □·무 ■) O·증강음·인력취급시·인력(12kg) 및 취급형태 -> (돌기) ■·(밀기) □·(끌기) □ O·작업환경측정·측정유무(측정 ■·미측정 □)· 배달두부 -> Hexane 측정치 4ppm(농축기 3%~50ppm) O·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·필요유무(유 ■·무 □)			

[위험성평가서] 양식 "4M-RA-001"



「위험성평가서」 양식 [4M-RA-002]



개선 대상· 경정 대입정		프라 캐드· 공정		개선 실행·계획서				발령부서	발령	팀장	공장장
작성 일시		2006. 2. 10						팀장부서	수	수	수
								팀장부서	답장	팀장	팀장
								팀장부서	수	수	수
개선 대상 단위 작업		J		개선 대책 [위험성평가서 대책보다 구체화 예시]				개선 대책의 실시기 [확인 일자]			
코드 번호	제작 제작	조치 결과	발령	담당자	확인 일자	비고					
J	A-5-J	J	J	J	2/10/J	적정인정	J	J	J	J	J
J	A-7-J	N/A	J	J	2/10/J	적정인정	J	J	J	J	J
J	A-9-J	정지	J	J	4/15/J	정비인정	J	J	J	J	J
J	A-10-J	정지	J	J	4/15/J	정비인정	J	J	J	J	J
J	A-11-J	정지	J	J	2/10/J	정비인정	J	J	J	J	J
J	A-2-J	정지	J	J	2/10/J	적정인정	J	J	J	J	J
J	A-6-J	N/A	J	J	3/15/J	정비인정	J	J	J	J	J

[위험성평가서] 일식 4M-RA-003



**KOSHA**

감사합니다!